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39 | 2024.06.10. (2024.06.03~06.0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6.03~06.09)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구축방안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 목표**로 하며, **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②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는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③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 지원, ④ '25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인수·합병 플랫폼과 협력하여 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 ⑤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기반시설(인프라)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추고,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실시하는 경우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완화)** 통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납부한도는 현행 유지하되, 기업의 납부기준인 납부요율은 현행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 **② (연구자 보상)** 대학 · 출연(연)의 모든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 **③ (우수 납부기업 인센티브 부여)** 기술료 우수 납부 중소·중견 기업*이 다른 R&D 과제 신청시 가점 부여(중기부) 또는 연구비 사용·정산 절차 간소화(산업부) 적용 등입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6~8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4.6월~) 및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개정('24.下)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신속 시장 대응이 가능한 민간과 함께 기술개발을 넘어 실증까지 차세대 원자력 조기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청정에너지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 미래 신산업 창출'을 달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실증 로드맵 연내 수립, ②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 : Korea-Advanced Reactor Demonstration Program)' 도입·추진, ③ 기술개발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전규제체계 마련, ④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⑤ 차세대 원자력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24.1.23.)되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

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24.1.30일 발표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행위, 손해사정사 교육기준 마련,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사항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주식병합 시 회사는 병합사유 및 비율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도 설명하게 하며, 주식병합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신설하고, 단주의 가액을 종전의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여 주식병합의 경우에도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

하도록 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의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4인)」,**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차별없는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원칙에 맞게 개정하고자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등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의사일정(안)】

제22대국회는 **6/5(월)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우원식 국회의장 및 이학영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며, 6/10(월) 17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국회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발표(기획재정부) ········· 7
-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
-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의 무탄소 에너지원, 차세대 원자력 신속 확보 본격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 16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 16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16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 ········· 16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7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7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 17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8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 18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 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금융위원회) ········· 19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 2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 21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 21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2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 2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2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 2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 24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 25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37인) ······· 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 26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 2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 26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 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 2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4인) ···························· 29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 30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 30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 31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23인) ············ 31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 32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 3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6.03~06.09) 바로가기

- **[건설/부동산]**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도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금융]** 금융위원회, 전환사채 등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발표
- **[에너지 · 자원]**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
- **[해외 규제]** 美 재무부,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규정(내국세법 Section 30D) 최종안 발표
- **[ESG]**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6.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밸류업 계획 관련사항 기재 의무화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합동)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발표 - '중소 →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 만든다	2024-06-03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함

정부는 현 상황을 중소기업들이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혁신, 자금조달,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기업 성장시 지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성장유인이 둔화(「피터팬 증후군」)되고 분산된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 효율성 약화되는 점은 감안하여, 성장친화적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기업성장 활성화 기대를 도모하고자 함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여 경제의 역동성 회복 추진하기 위한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하고, 앞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하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 목표**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성장유인 제고

②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는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민간 전문가 협력망 자원(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연결하여 맞춤형 확장전략 수립 예정
-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제공하고 수출 · 연구개발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

③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 지원

-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은+시중은행 6조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확장을 위해 '25년에 P-CBO 6천억원 및 보증 5천억원 공급 계획
- 확장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24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④ '25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인수·합병 플랫폼과 협력하여 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

-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혜택을 주는 방안 검토

⑤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기반시설(인프라) 강화

–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하여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5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추진 전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발표 -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50% 하향 조정 - 기술료의 연구자 보상 사용비율 기준 상향 조정	2024-06-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추고,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실시하는 경우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

정부는 그간 부족한 연구개발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왔음. 그러나, 기업 등에서 현행 정부납부기술료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납부기준을 1/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납부요율(수익 대비): (현행)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 (개선)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

그리고,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자가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탁월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

또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고취하고,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추가적인 성과를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함

기술료 제도개선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완화)** 통상문제 등을 고려하여 **납부한도는 현행 유지**하되, 기업의 납부기준인 **납부요율은 현행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

구 분	현 행(A)	개 정(B)	비고(B/A)
중소기업	5%	**2.5%**	50% ↓
중견기업	10%	**5%**	50% ↓
대기업	20%	**10%**	50% ↓

② **(연구자 보상)** 대학 · 출연(연)의 **모든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

구 분	현 행(A)	개 정(B)	비고
연구자 보상 기술료 기준	50% 이상	**60% 이상**	-

③ **(우수 납부기업 인센티브 부여)** 기술료 **우수** 납부 **중소·중견 기업***이 다른 R&D 과제 신청시 **가점 부여**(중기부) 또는 **연구비 사용·정산 절차 간소화**(산업부) 적용

* (예) 2~3년 이내 기술료 완납 등

정부는 동 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6~8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4.6월~) 및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개정('24.下)** 등을 추진할 예정임

< 과제별 추진 계획 >

정책 과제	부처	추진시기
•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경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과기정통부	'24.6~
• 기술료 우수 납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정)	산업부/ 중기부	'24.下/ '24.6~
• 우수성과 연구자 보상 강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과기정통부	'24.6~

< 기술료 제도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근거) >

○ **(정의) 연구개발성과 실시*의 대가로 기술실시권자(기업)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R&D 수행기업·대학·출연연 등)에 지급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그 성과를 활용(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기술료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

○ **(기술료 납부) 연구개발성과 소유 기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과 수익(직접실시) 또는 징수한 기술료 수입(3자실시)의 일부를 납부**

* 납부한도(정부연구개발비 대비) :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납부요율(매출액 또는 징수한 기술료 대비) :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

○ **(기술료 사용)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비영리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연구자 및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 사업화, R&D 재투자 등에 사용**

< 기술료 제도 운영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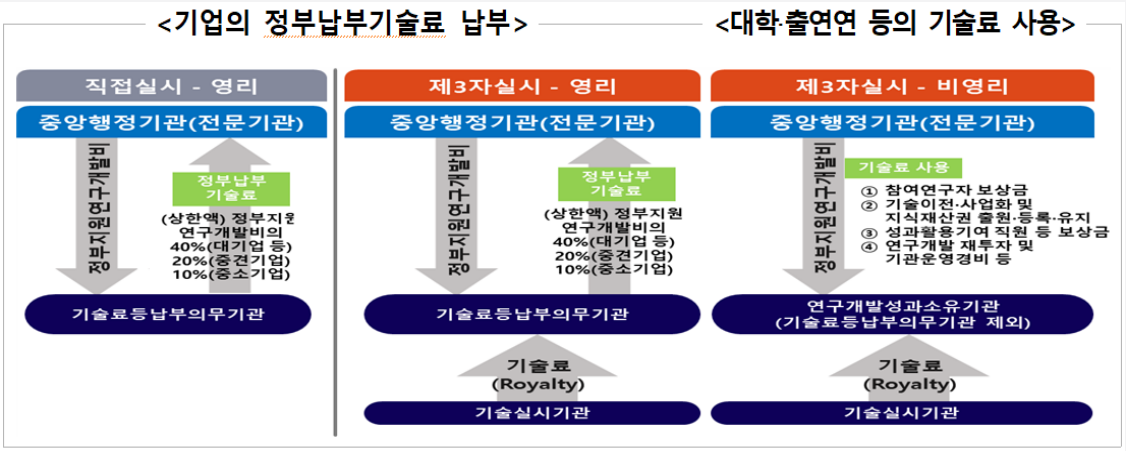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 발표** -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의 무탄소 에너지원, 차세대 원자력 신속 확보 본격화	2024-05-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함.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2030년대 초 개화될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 대응하여 기술 및 시장 주도권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 제시를 위해 마련됨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의 빠른 성장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이 뛰어난 차세대 원자로는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부문뿐 아니라, 산업 및 수송 등 모든 에너지 이용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각 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함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부터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설계 및 제조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실증 경험과 민간 주도 사업화 모델 부재 등으로 상용화를 위한 준비는 다소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속 시장 대응이 가능한 민간과 함께 기술개발을 넘어 실증까지 차세대 원자력 조기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청정에너지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 미래 신산업 창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실증 로드맵 연내 수립

- 우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Innovative-Small Modular Reactor)의 핵심기술을 신속 확보하여 '25년까지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30년대 글로벌 SMR 시장진입을 목표로 국내·외 사업화를 준비
- 이를 위해 (가칭)i-SMR 홀딩스 등 사업화 기관 설립,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등 사업화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
-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원자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목표, 달성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24년 하반기에 수립·발표
- 로드맵에는 경쟁력 및 파급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지원할 노형을 선정하고, 민·관 역할 분담, 인허가 대응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임

②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 : Korea-Advanced Reactor Demonstration Program)' 도입·추진

- K-ARDP는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신속 상용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까지 지원하는 약 2조 5천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임
- 현재 기술수준에 따른 실증 시기를 고려하여 약 4~5년 내 실증로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한 '단기 실증 유형'과 초기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 유형'으로 구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개발 및 성능 시험·검증 등 '실증 신속화 지원' 추진

	대상	지원내용
단기 실증 유형	▪ 기 확보 기술기반으로 4~5년 내 실증로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한 노형 (예)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등	▪ (1단계)기본설계, (2단계)실증·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1개 노형에 실증 집중** 지원
중장기 전략 유형	▪ 핵심기술 확보 필요, 기본설계 완료까지 6~9년 소요되는 노형 (예) 용융염원자로, 히트파이프 원자로 등	▪ 노형별 **핵심개념·기술 확보에 집중**, 개념설계 완료 후 기술수준 및 민간/공공 수요 등에 따라 **2단계 추진여부 결정**
실증 신속화	▪ 단기·중장기 유형에 공통 적용	▪ 차세대 원자로 **실증 신속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통기술(Cross-cutting) 개발, 성능 검증·시험** 등

③ 기술개발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전규제체계 마련

- i-SMR에 적용되는 혁신기술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까지 규제체계 마련
-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혁신기술의 규제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개발의 시행착오와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검증·평가 기술 확보
-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30년대초까지 규제기준·기술 등 안전규제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
- 우선 비경수로 규제에 적용할 기반기술, 공통적용기술 등에 대한 신규 R&D에 착수하고, 노형별 기술개발 일정을 고려해 세부 검증기술 개발 추진
- 차세대원자로의 적기 인허가 심사 이행을 위한 규제인력 확충·양성 추진

④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공백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 영국 등과 상호 보유한 강점 기술을 공유하고 보유 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 차세대 원자로 실증 및 핵연료 공급 등의 분야에서도 해외 연구소,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실증사업에 해외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해외 개발·실증 사업에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검토

⑤ 차세대 원자력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차세대 원자력의 신속 상용화를 위해서는 민간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이 핵심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연내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을 통해 민간주도 상용화 촉진
- 차세대 원자력 분야의 연구 및 산업 인력 수요·공급 전망을 바탕으로 '24년 하반기에 '차세대 원자력 인력 양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센터 확대 등 추진

<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 >

원자력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 공공주도 → 민간주도
기존
공공주도 경수형 대형원전
출연연 · 공기업
(주도)
원자로 설계
핵연료 공급
R&D
운영·관리·수출
민간
(제한적 참여)
기기제작
시공·건설
전력
시장
다변화
향후
민간주도 소형모듈원자로
출연연·공기업
(협력)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기술 이전, 인프라 공유
민간
(주도)
신규 밸류체인 참여기업
독자 노형설계
기자재공급·서비스
국내외 사업화
제작·시공·건설
전력
열공급
수소생산
신재생연계
자원순환
해양·우주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 추진
원자로 설계 전문 민간기업 육성 및 신산업 창출
인력양성 체계화
첨단실험장비 확보
국제공동연구
인허가 개발 지원
핵심기술개발사업 지원
민간참여 활성화
부지 공모
실증 재원 지원
중장기 전략 유형
단기 실증 유형
실증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
전략적 국제협력
선제적 규제 체계 구축
민간기업육성 연구조합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 비전 및 목표 >

비전	**차세대 원자력 실현으로** **청정 에너지 확보 · 에너지 안보 강화 · 미래 신산업 창출**
목표	**2030년대, 차세대 원자로 기술 확보(설계 전문기업 2개 육성)** **& 설계부터 완제품까지 전주기 사업화 · 수출**

정책 방안	주요 내용
1 기술개발 및 실증 로드맵 수립	‣ (단기 : i-SMR) 혁신기술 신속 확보 및 '25년까지 표준설계 완료, 국내·외 사업화 적기 추진 ‣ (중장기 : 차세대 원자력)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실증 로드맵 수립
2 (가칭)K-ARDP 도입·추진	‣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 도입·추진 → 설계역량 보유 민간기업 육성 및 신속 상용화
3 안전규제체계 적기 구축	‣ i-SMR 인허가 신청 전 규제체계 마련 ‣ '30년대초까지 비경수로 규제기술 단계적 확보 ‣ 전문성 있는 규제인력·전담조직 확충
4 전략적 국제협력	‣ 한-미, 한-영 국제공동연구 ‣ 국내·외 기업 파트너십 강화 ‣ 핵연료 취급·제작 기술개발 협력
5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체계적 연구·산업인력 양성 추진 ‣ 연구조합을 통한 민간주도 상용화 촉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01 시행 예정

'껌'에 대한 소비량 감소 및 배출문화의 정착이라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껌'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품목에서 제외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36조)**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01 시행 예정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별표 4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01 시행 예정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전기사용자가 사용한 전기요금의 '1천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는 전기사용자가 사용한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제36조)**

국토교통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4-06-03 시행

항공사 간 기업결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을 방지하고 항공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외국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에는 그 시정조치 및 명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한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배분기준, 방법과 절차 및 그에 따른 배분내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1조 신설)**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6-04 시행

도서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국내선 운항 항공기의 승객 좌석 수 상한을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80석 이하인 항공기를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은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75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 소형항공운송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 간 업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의 승객 좌석 수 하한을 51석에서 81석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1 제3호, 별표 2 제1호, 별표 2 제2호다목 신설)**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6-04 시행

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 간 업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의 승객 좌석 수 하한을 51석에서 81석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승객 좌석 수 규모를 개정된 대통령령의 국내항공운송사업의 승객 좌석 수에 맞추어 51석에서 81석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제2조제1항)**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6-03 시행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중 수온, 염분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4차 위반 시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에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완화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 방법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3 제1호나목, 별표 3 제1호다목, 별표 3 제2호사목, 별표 8 제1호나목 등)**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6.03. ~07.01.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24.1.23.)되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신설 (안 제41조의2제1항)**

②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전통지 신설 (안 제41조의2제2항)**

③ **법 제 15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안 제41조의3제2호)**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전화: 044-202-6664, 팩스: 044-202-603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6.05. ~07.1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법률 제19750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으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사업 부정수급 검증, 농업인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하는 세부 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적정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관계기관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 목적 범위 내 정보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보조사업 부정수급 검증 및 농업인 제출 서류 간소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하는 세부 연계 정보를 정함 (안 제20조의2 및 별표1 신설)**

② **관계기관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업무 목적 범위내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20조의3 신설)**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안 제20조4 신설)**

④ 근거 법 조항 삭제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안 제22조 삭제)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전화: 044-201-171, 팩스: 044-863-921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6.05. ~07.1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법률 제19750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으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 (안 제9조 및 별표1 신설)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전화: 044-201-171, 팩스: 044-863-921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24.06.04. ~06.07.

’24.1.30일 발표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일정규모 이상 자기주식 보유시 공시의무 부과 (시행령안 제176조의2제6항, 규정안 제4-3조제1항 제3호 거목)
-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 등

②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 제한 (시행령안 제176조의5, 제176조의6)
-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인적분할 또는 합병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

③ 자사주 처분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확대 (규정안 제5-1조제2호, 제5-2조제3호)
-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상대방,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④ 자사주 신탁취득 등에 대한 규제차익 해소 (규정안 제5-2조, 제5-4조, 제5-10조)

-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취득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직접 취득과 규제차익 해소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02-2100-2691, 팩스: 02-2100-2678)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6.04. ~06.07.

보험업법 개정('24.2.6일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행위, 손해사정사 교육기준 마련,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사항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안 제96조의3)

- 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마련(손해사정업자 평가기준, 위탁절차, 위탁대상 업무 범위 등)
- 법 제185조제4항제2호의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건수의 50%로 규정

②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 행위 (안 제96조의6)

- 법 제185조제5항제8호의 불공정행위로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 등을 규정

③ 손해사정사 교육 기준 마련 (안 제96조의7, 별표4의 4호)

-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해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규정
-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운영

④ 손해사정업자 공시 사항 (안 제96조의8)

-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직·인력, 손해사정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 현황을 규정

⑤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9)

- 손해사정 관련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 02-2100-2962, 팩스: 02-2100-2947)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2024-06-05 발의

현행법은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적 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단지 주주 사이에서 부의 이전의 결과만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의 임무해태가 아니어서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바, 이와 같이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382조의3)**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2024-06-07 발의

현행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병합의 경우 그 목적과 병합비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대주주가 과다한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것을 결정하면 대규모의 단주(端株)가 발생하게 되고, 단주의 처리과정에서 주식병합비율 미만의 소수주주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강제로 축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병합 시 회사는 병합사유 및 비율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도 설명하게 하며, 주식병합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신설하고, 단주의 가액을 종전의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여 주식병합의 경우에도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439조, 제443조 및 제441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2024-06-07 발의

최근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보험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전체 보험료 중 4% 대로 미미한 수준임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용수익이 저조한 데 기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95조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4-06-03 발의

현행법은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톤세제 제도는 해운기업의 납세액 예측에 따른 경영 안정화를 비롯하여 톤세 절감액을 통한 재투자 가능성이 향상되는 등의 이점이 있으며,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해운 선진국들 또한 톤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등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톤세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요 해운국과의 대등한 세제 환경 조성과 국내 해운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04조의10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2024-06-05 발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있어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지난 2022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세대별 TV 대체 속도'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0년부터 계속 증가해 2021년 93.4%로 보편적 국민매체가 됐음. 연령별로 스마트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50대 이하 국민의 99%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60대는 2016년 60.3%에서 2021년 91.7%, 70대 또한 2016년 17.6%에서 2021년에는 60.1%까지 급증했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쇼핑부터 의료서비스까지 비대면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은 국민 생활에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음

그러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2022년 4분기 13만4,900원, 2023년 13만200원, 2023년 2분기 12만1,900원, 2023년 3분기 12만9,900원으로 10만원 이상 부담하고 있음

이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비에 대해서는 201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산입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현대사회의 필수품인 이동통신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여함 (안 제126조의2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2024-06-05 발의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1명), 35만원(2명), 65만원(3명)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자녀세액공제 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자녀 출산 ·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30만원(1명), 60만원(2명), 90만원(3명)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 · 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 (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2024-06-05 발의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 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 ·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59조)**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2024-06-07 발의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0,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4명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 또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세율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55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2024-06-07 발의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이러한 예체능 교육기관들이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당수 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 예체능 학원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함 (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024-06-05 발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 촉진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대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으며,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특히, 2013년에는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수가 36곳이었는데 반해 2022년에는 5곳, 2023년에는 단 1곳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데 기업의 적극적인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55조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37인)	2024-06-07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초유의 직무유기와 국회 무시로 방통위를 파행으로 몰아갔음. 이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의 결정으로 방통위를 좌지우지함으로써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전례없는 반민주적 폭거임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초유의 직무유기와 국회 무시로 방통위를 파행으로 몰아갔음. 이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의 결정으로 방통위를 좌지우지함으로써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전례없는 반민주적 폭거임

실제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이에 **더 이상 5인 위원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5인 위원의 구성이 완료된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안 제13조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2024-06-03 발의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의2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2024-06-03 발의

지난 22년 9월 본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를 통하여 제공되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음

그러나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 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OTT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 배포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광고 · 선전물의 특성상 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배포 · 게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 영상물의 이용 역시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 · 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6조의2 · 제66조의3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06-03 발의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 보호를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요 농산물 가격이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 · 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생산자인 농민의 희생이 커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 · 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적정가격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대상 품목을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대상 품목의 적정가격을 평년가격,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산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④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의 선정, 적정가격의 산정, 차액의 보전비율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안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 각각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2024-06-05 발의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110조 원, 국내 약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계화 · 자동화 · 무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수산기자재 관련 산업도 함께 지원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수산기자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안 제4조 및 제5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 · 고시, 신기술 수산기자재 보급 촉진 시책 마련,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수산기자재의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 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 등을 통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도록 함 (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상기자재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지역 또는 집합체를 수산기자재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고,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 (안 제22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2024-06-03 발의

현행법상 통상임금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2013년 대법원은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한편, 2018년 5월「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되었음

그러나 일부 사업주는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비중을 높여서, 현행법에 따른 통상임금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책정하고 이에 연동하는 각종 수당을 과소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의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4인)	2024-06-03 발의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위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 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1주 간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에 있어, 1주 간의 합계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계도 연장근로시간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왔음

이는 소위 '크런치 모드(Crunch mode)'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중적 근로를 방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연장근로에 1주 간의 한도만 두고 있을 뿐이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쉬지 않고 하루 21.5시간의 '몰아치기 밤샘노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임

이에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53조, 제54조)**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2024-06-03 발의

대한민국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입법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에 따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달라짐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을 발생시키고, 해당 업종을 저임금 직종으로 낙인찍게 되어 고용에도 부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또한 ILO 원칙과 국제기준, 대한민국 헌법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차별 없는 적정임금 보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3개월 이내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023년 12월 말 기준 39.7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19.8%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노동현실로 내몰고 있음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미 2014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도 있음

또한 수습 중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문제도 최저임금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기본적 취지와 달리 수습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의 문제와 '근로계약 기간' 및 '단순노무' 여부 등 다양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차별없는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원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 (안 제4조제1항 후단 삭제)

②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심의 대상 삭제 (안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호 삭제)

③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규정을 삭제함 (안 제5조제2항 삭제)

④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삭제함 (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 삭제)

⑤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구분 삭제 (안 제10조제2항 단서 삭제)

⑥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삭제 (안 제19조제1항)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2024-06-04 발의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매년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와 같은 심의 및 의결 권한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인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 대한 과정과 내용이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 대한 회의록과 결정 근거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17조의2 신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 (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②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함 (안 제17조의2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2024-06-05 발의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과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 ·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향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의 경제성장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2차 혁신도시의 조성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23인)	2024-06-05 발의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도권 일극체제'는 일자리 · 문화 · 의료 등 모든 부문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중대히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도시 외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역차별의 소지가 있음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방은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등 지방도시 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를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입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이전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비**하고자 함

아울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무 및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입주기관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3제5호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2024-06-07 발의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면서 채용비율은 시행령에서 최대 신규 채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대학 등이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지역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 내 우수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전국적 지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지 순환 등 인력운용에도 한계가 있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대학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2)**

국토교통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2024-06-05 발의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이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2006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조합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6/10(월) 17:00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국회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6/10(월) 14:00	**ESG 노동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	김현정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6/10(월) 14:00	**한·일 국제 원자력 안전 전문가 토론회** - 지진과 원전 안전	곽상언 · 김정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6/10(월) 14:00	**바람직한 한중 관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친중 사대 부역	김상훈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6/10(월) 14:00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듣는다**	오세희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6/11(화) 07:30	**저출생 위기의 원인과 해법** - 한국은행 저출생 보고서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6/11(화) 10:00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김남근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6/11(화) 14:00	**2024 한국유엔봉사단 SUMMIT 포럼**	송석준 의원실, 한국유엔봉사단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6/11(화) 14:00	**5.18 44주기 서울 토론회** - 윤상원 열사와 서울역 회군	민형배 · 염태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6/11(화) 16:00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	김윤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12(수) 09:30	**AX 시대, AI 강국 도약을 말한다**	안철수 · 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6/12(수) 10:00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분단 구조의 극복을 위하여	김준형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12(수) 14:00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 지역계정 신설 및 민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오기형 · 김남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6/13(목) 14:00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정점식 의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원회관 2소회의실
	6/13(목) 14:00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 - 아동수당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자산 형성 방안	강선우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6/14(금) 14:00	**지속가능한 부동산금융생태계 구축 방안**	오기형 · 송석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6/15(토) 13:00	**한국의 안보상황과 북한 핵 위협** - 한국의 핵무장은 필요하고 가능한가?	김민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6/10(월)	**「이달의 입법민원」(2024. 5월호) 발간**	국회사무처	
	6/10(월)	**「팩트북」 제110호 발간** - 병역제도와 국방개혁	국회도서관	
	6/10(월)	**「THE 현안」 제14호 발간** - 사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위험 고독 그리고 외로움		
	6/1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7호 발간** -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		
	6/12(수)	**「금주의 서평」 제682호 발간** - 도서명 :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저자 : 자미라 엘 우아실, 프리데만 카릭		
	6/12(수)	**「World&Law」 제2024-11호 발간** - 교제폭력, 제대로 처벌하려면?		
	6/12(수)	**「Data & Law」 2024-5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6/13(목)	**「현안, 외국에선?」 제83호 발간** - 일본의 新 NISA, 자산증식을 위한 평생 비과세제도		
	6/13(목)	**「NABO Focus」 제72호 발간** - 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6/10(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98호 발간** - OECD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방식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6/3(월)	**「THE 현안」 제13호 발간** - 병역제도와 국방개혁	국회도서관	
	6/5(수)	**「금주의 서평」 제681호 발간** - 도서명 :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저자 : 손호영		
	6/4(화)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 발간** -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 1호(재정통계) -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 2호(조세통계) -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 3호(경제통계)	국회예산정책처	
	6/5(수)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발간**		
	6/4(화)	**「NARS 현안분석」 322호 발간** -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국회입법조사처	
	6/3(월)	**「Futures Brief」 제24-05호 발간** - 미래 사회와의 협약, P.A.C.T: 대한민국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국회의 과제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6.03~06.09)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6/4(화)	건설/부동산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도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6/4(화)	금융	금융위원회, 전환사채 등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발표
6/4(화)	에너지 · 자원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
6/5(수)	해외 규제	美 재무부,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규정(내국세법 Section 30D) 최종안 발표
6/7(금)	ESG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6.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밸류업 계획 관련사항 기재 의무화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